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10호

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고시

2026. 2. 12.

식품의약품안전처

1. 개정이유

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 부정·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목적을 동 규정에 명확화(안 제1조)

- 1)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, 지급금액을 행정규칙의 목적에 명확히 함

나.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 금액 명확화(안 제4조)

- 1)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조정

다.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(안 별지 제1호 서식)

- 1) 포상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한을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(7일 → 30일)
- 2)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분기관에 제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

(1) 행정예고(공고 제2026-015호, 2026. 1. 13.)

(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비대상(제2026-113호, 2026. 1. 8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10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6조의2에 따른 「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51호, 2023. 8. 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”를 “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6조의2 및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”로, “지급”을 “지급대상, 지급금액, 지급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”을 “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신고자 1인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연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포상금 지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
신청인	성명	
	생년월일	
	주소	
	전화번호	

신청내용	신고일자	
	접수번호	
	신고방법	☐ 부정·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(1399) ☐ 국민신문고 ☐ 기타()
	신고내용	
	포상금액	만원
	계좌번호	☐ 은행명 () ☐ 계좌번호 ()

「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계좌정보	신고포상금 지급	5년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	☐ 예 ☐ 아니요
---------------	---

첨부서류	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) 사본 1부 2. 신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작성요령

- 신고방법의 부정·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(1399), 국민신문고,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며, 기타를 선택할 경우 괄호란에 직접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을 기입합니다.
- 신고 내용은 주요 요지만 작성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6조의2 및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----- ----- 지급대상, 지급금액, 지급 -----.
제4조(지급방법 및 절차) ① · ② (생 략)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	제4조(지급방법 및 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신고자 1인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연간 -----.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